



한국기업지배구조원
(www.cgs.or.kr)

보 도 자 료 (Press Release)

보 도 일 자

2018. 4. 3(화) 조간

2018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

I. 개요

□ 한국기업지배구조원(이하 KCGS)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, 2018년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37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의안분석 보고서(이하 '의안분석 보고서')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함

○ 의안분석 대상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62사,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3사, 코넥스시장 상장사는 2사이며, 분석 기준은 2018년 2월에 개정된 「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」 임

II. 의안분석 결과

□ 237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총 1,590건의 안건¹⁾을 상정하였으며, 임원 선임 안건이 872건(54.8%)로 가장 많음

□ KCGS는 이 중 225건(14.2%)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, 반대 권고가 1건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과반(50.6%)으로 나타남

○ 반대 권고율은 전년(18.0%) 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이며, 이는 장기연임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(위원) 후보가 전년 16.4%에 비하여 절반 수준(8.8%)으로 감소한 것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기준이 완화된²⁾ 것에 기인함

〈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〉

구분	전체	재무제표·이익배당	정관변경	임원 선임								이사 보수 한도	감사 보수 한도	기타 비정기 상정* 안건
				이사회				감사기구			계			
				사내 이사	기타 비상무 이사	사외 이사	계	감사 위원	감사	계				
반대 권고율(%)	14.2	2.1	12.2	4.7	0.0	30.5	16.7	28.6	34.6	29.3	20.1	2.1	0.0	48.3
반대 권고수(건)	225	5	11	14	0	93	107	59	9	68	175	5	0	29
상정 안건수(건)	1,590	241	90	298	37	305	640	206	26	232	872	236	91	60

* 회사분할의 건, 임원퇴직금지규정 제·개정의 건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, 주식분할의 건,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등

1) 경영진 제안으로 한정함

2) 연간 참석률이 1회라도 75% 미만인 경우 반대 권고하는 기준에서 3년 간 평균참석률이 75% 미만인 경우 반대 권고하는 기준으로 변경됨

□ (임원 선임) 기타 비정기 상정 안건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(위원)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이 30% 수준으로 가장 높았음

- 특히, 지난 3년 간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사외이사를 재선임 안건으로 상정시킨 사례 2건을 포함하여, 평균 참석률이 75% 미만인 후보가 26명임
- 계열회사의 전·현직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 또는 감사(위원)으로 상정한 사례 2건을 포함하여, 최대주주·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사외이사나 감사(위원) 후보가 11명 발견됨
- 상근감사임에도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을 겸직하는 등 이사 및 감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18건 발견됨

〈임원 구분별 반대 사유 현황〉

임원선임	사내이사* ¹	사외이사	감사(위원)	계
행정적, 사법적 제재	9	2	1	12
회사가치 훼손, 주주권익 침해	5	8	7	20
부적절한 겸임	0	11	7	18
최대주주* ² 등 특수관계인	-	7	2	9
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 재직 경력	-	0	2	2
이해관계자* ³ 의 특수관계인	-	29	22	51
장기연임	-	30	17	47
낮은 출석률	-	19	7	26
과도한 비감사용역비	-	-	12	12
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 등	-	-	3	3
감사위원회 4회 미만 개최	-	-	2	2
계* ⁴	14건	106건	82건	202건
반대 권고* ⁴ /후보 수* ⁵	14명/335명	93명/305명	68명/232명	176명/882명

*¹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포함

*² 최대주주·주요주주·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

*³ 이해관계는 거래관계·경쟁관계·협력관계 등을 포함

*⁴ 반대사유 합계가 반대 건수를 초과하는 것은 동일 안건에 대해 복수의 반대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임

*⁵ 동일인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모두 상정되는 경우와 서로 다른 회사의 후보로 상정되는 경우 각각 별도의 후보로 집계함

□ (정관 변경) 회사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한 기업도 적지 않게(11건) 발견됨

- 한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음성송수신에 더하여 이메일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는데, 이사회는 집단적 의사결정(collective decision making)으로서 의의가 있고, 이메일을 통한 결의는 의견 교환을 통해 회사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 이사회의 의의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

- 또 다른 회사에서는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그 세부 변경 내용을 주주총회소집공고에 공시하지 않음에 따라 주주가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함
 - 상기 사례를 포함하여, KCGS는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을 1일 전으로 단축하는 안, 이사회 의사결정권인 사항을 삭제하는 안,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소 행사 가능시점을 단축시키는 안 등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관 변경에 대해 주의를 촉구함
 - 단, 정관 변경을 상정한 기업 중 8사는 상이한 성격의 정관을 분리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, 이는 주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
- (기타) 배당, 이사·감사의 보수 한도 및 기타 비정기 상정 안건에서도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건이 상당수(39건) 상정됨
- 자본투자자로서 주주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과소한 배당을 제시한 경우, 성과 및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이사 보수 한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각 5건 발견됨
 -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과 관련하여, 기간에 따른 행사 가능 수량 설정, 기간별로 할증률 적용,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행사 가능 수량 설정 등 성과연계성을 지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례가 일부(8사) 발견된 점은 긍정적이나,
 - 행사요건의 성과 연계성이 미흡한 안건과 유인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안건이 더 많이 발견됨(25사)
 -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·개정하면서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하부 위임규정을 두거나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저해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반대 권고함
- 이처럼 주주가치 제고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건이 상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므로 상장회사의 개선 노력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됨

담당부서(문의처)

사업본부 분석2팀
방문옥 팀장(02-6951-3721, moonoki@cgs.or.kr)
이수원 파트장(02-6951-3722, swlee@cgs.or.kr)